

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「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「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」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
하동군의회의장

1. 청구 취지: 「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」 제정
2. 청구인의 대표자

성명	주소
손지배	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1-1

3.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: 2026. 7. 14.(화)

4. 청구 이유

○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

5. 서명요청 기간: 2026. 7. 14.(화) ~ 2026. 10. 14.(수)

6. 정보시스템 서명(서명취소)방법

○ 인터넷 검색창에 “주민e직접”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주소 (www.juminegov.go.kr)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.

7. 문의

○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하동군의회 의회 사무과 의사팀(055-880-293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